

#### [서식 예] 광업권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

# 광업권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

채 권 자 주식회사 ○○은행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●●●(소관 ○○지점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겸 소유자 ◇◇광업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◈◈◈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청구금액의 표시

원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## 경매할 광업권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음

## 신 청 취 지

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, 채권자 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 신 청 원 인



- 1. 채권자는 채무자 겸 별지목록 기재의 광업권에 대한 소유자에게 20○○. ○. ○. 금 ○○○원을 대여하면서, 갚을 날짜는 20○○. ○○. ○. 이자 연 ○○%, 이자 지급기일 매월 말일, 지연손해금 연 ○○%로 약정하였으며, 특약으로써 채무자가 이자를 단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는 원리금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
- 2. 또한,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○○○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필하였습니다(등록번호 제○○○호).
- 3. 그러나 채무자는 갚을 날짜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갚을 날짜가 지난 지금 까지 위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.

## 첨 부 서 류

1.	근저당권설정계약서	1통
1.	차용금증서	1통
1.	기본계약 해지통지 및 변제독촉 내용증명	1통
1.	광업권등록원부등본	1통
1.	법인등기사항증명서	2통
1.	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영수필확인서, 영수필통지서	각 1통
1.	집행비용예납서	1통
1.	송달료납부서	1통
1.	광업권목록	40통

20○○. ○. ○. 위 채권자 주식회사 ○○은행 대표이사 ●●●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[별 지]

# 광업권의 표시

- 1. 등록번호 제 ○○○호
- 2. 광구소재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- 3. 광 종 명 금·은·동광
- 4. 면 적 15,000 m<sup>2</sup>
- 5. 광업권의 존속기간 20ㅇㅇ. ㅇ. ㅇ.부터 20ㅇㅇ. ㅇㅇ. ㅇㅇ.까지. 끝.



	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		
제출법원	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4조		
	제79조, 제268조)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	(신청인)		
	· 경매신청 기각· 각하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83		
	조제5항, 제268조)		
   불복절차	・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		
<sup>길 - 길 - 길</sup> - 기 간	조제2항)		
ᄎ 기신   	(이해관계인)		
	·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		
	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, 제		
	265圣).		
	•인지액: 5,000원(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)		
	·송달료: (이해관계인 수+3)×000원(우편료)×10회분		
비 용	・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: 12,000원(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8		
	호라목)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		
	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)납부		
	·경매에 필요한 비용(감정료, 매각수수료 등) ·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		
	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(광업법 제		
   기 타	고는 구승산에 된한 한법 기다 법생의 비생을 분중함(생합법 세   10조제1항).		
	·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 중		
	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(수산업법 제16조제2항).		
	조직에 전면 비성들 문항함(下신급급 제10소세2명).		